

## 평가대행자 업무폐업 신고서

등록번호		등록일	
소재지		폐업일	
사유			

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2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 업무폐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평가대행자

(서명 또는 인)

교통투자평가협회장 귀하